

행정처분기준(제42조제2항 관련)

I. 일반기준

1.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.
2.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,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.
3.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.
4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
II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령	행정처분		
		1차	2차	3차
1.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.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.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	영업소 폐쇄 시정명령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
2.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 ·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	법 제59조제1항	시정명령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
3.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,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	시정명령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
4.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				

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.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 한 경우 나.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·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			
	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소 폐쇄
		시정명령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
5.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 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 우 가.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.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			
		시정명령	영업정지 3개월	
		시정명령	영업정지 1개월	
6.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9조제1	시정명령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